



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체크리스트

[사업장폐기물 배출자]

1. 관련법령

번호	점검사항 및 주요확인사항	관련법조 (법명 : 폐기물관리법)
인허가 관련		
1	(공동)사업장폐기물의 지정폐기물 여부, 수탁자 처리능력 확인 • 업종 및 시설 분류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여부 확인 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대기배출시설 분류 참고)	• 법 제17조 제1항, 시행규칙 제16조의5 및 제17조 • (지정폐기물의 종류) 시행령 제3조 별표1 • (지정폐기물 유해물질 기준) 시행규칙 제2조 별표1
2	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여부 • (대상)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• 대상여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확인 • 대상일 경우 관할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실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 여부 • 지정폐기물 월 평균 배출량 30% 이상 증가, 새로운 지정폐기물 배출, 지정폐기물 처리방법 및 처리자 변경, 사업장 상호·소재지 등이 변경되는 경우 등	• 법 제 17조 제5항,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• (변경확인) 법 제17조 제6항, 시행규칙 제18의2 제7항·제8항
3	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여부 • (대상) ① 1일 평균 300kg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② 대기·폐수·소음·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된 경우 : 1일 평균 100kg 이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• 대상일 경우 관할 시군에 배출자 신고 실시 ※ 배출자 신고 미대상일 경우, 폐기물 배출량 근거자료 보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여부 • 사업장폐기물 월 평균 배출량이 50% 이상 증가, 새로운 사업장폐기물 배출, 폐기물 처리방법 및 처리자 변경, 사업장 상호·소재지 등이 변경 되는 경우 등	• 법 제17조 제2항,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• (변경신고)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
폐기물 보관 등 처리 기준 관련		
4	폐기물 보관 및 처리 기준 준수 여부 • 폐기물 혼합 보관 금지, 수집운반·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 흘날리거나 침출수 유출 되지 않도록 조치 • (보관시설)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창고에 보관, 지정폐기물은 보관표지판 설치 • (보관기한) 사업장폐기물 보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(위탁) ※ 지정폐기물은 종류별로 상이함. 시행규칙 별표5-4.나.6) 참고 • (폐기물위탁)적당한 처리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• 기타 폐기물별 보관기준 및 처리기준 준수(관련법조 참고)	• (폐기물 보관기준) 법 제13조, 시행령 제7조,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• (폐기물위탁) 법 제18조 제1항
올바로시스템 입력 관련		
5	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입력 및 실적보고 실시 • (인계·인수)폐기물을 처리계획에 따른 운반자에게 인계할 때마다 올바로 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 • (실적보고)매년 2월까지 전년도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을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보고	• (인계·인수)법 제18조 제3항, 시행규칙 제20조 별표6 • (실적보고)법 제38조, 시행규칙 제60조
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		
6	다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 이수 •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경우 •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서류를 제출한 경우 •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	• 법 제35조 제1항, 시행령 제17조 제2호·제3호,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

참고

1. 위 체크리스트 내용은 2019년 11월 법령 기준으로 제작됨
2. 최신 법령 조회 방법 :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(<http://www.law.go.kr>)에서 '폐기물관리법' 검색
 ▶ 최신법령을 조회하여 각 규정의 세부내용 확인 및 이행 필요



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체크리스트

[사업장폐기물 배출자]

2. 자가 체크리스트

점검일 년 월 일

점검항목	점검결과		조치 필요사항
	예	아니오	
1. 폐기물 처리 전 확인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배출시설 허가증(신고증명서)의 내용과 실제 시설 설치 사항이 다른 것이 없는가(변경허가, 변경신고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새로운 배출시설 설치 -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증설·교체·폐쇄 -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, 사용하는 원료 및 연료 변경 -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- 기타 사항 변경(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, 대표자, 허가사항, 일일조업시간 등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) 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2.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(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) 변경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고증명서(처리계획 확인증명서)에 변경사항이 없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적보고한 폐기물량이 신고한 폐기물량보다 증가 - 새로운 종류의 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 - 폐기물 처리방법 및 위탁 처리업자가 변경된 경우 - 사업장 상호·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등 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3. 폐기물 보관 및 처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폐기물 보관기준을 준수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붕과 벽면이 갖춰진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 - (지정폐기물) 법정 양식의 보관표지판 설치 - 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- 폐기물이 보관시설로부터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고,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지 여부 - 폐기물을 법정 보관기한 내에 처리하였는지 여부 폐기물을 허가받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고 있는가 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4. 올바른시스템 입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폐기물 인계·인수내역을 올바른시스템에 입력하고 있는가 매년 2월까지 전년도 폐기물 배출 실적을 보고하였는가 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5. 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 이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다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폐기물 처리 담당자가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경우 -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서류를 제출한 경우 -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
※ 이 자료는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-정보마당-부서별자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